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28. 최기상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4. 10.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9.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최기상)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중·고·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옥순)

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19세가 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시설[1]로, 입소기간[2]은 미성년 피해자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1.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

가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음.

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유형 및 입소 기간 >

보호시설 유형 (제12조)		입소 기간(제16조 및 시행규칙)		
종류(개소수)	입소대상	원칙(A)	연장(B)	연장 사유
일반보호시설 (17)	일반 성폭력 피해자	1년 이내	1년 6개월(1회) *도과 후 특례 적용	심리적 안정 필요, 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보호시설 (8)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피해회복기간까지 (1회당 2년)	피해 미회복으로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 필요 인정시
특별지원 보호시설 (4)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	**19세가 될 때까지**	**2년(1회)**	**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입학 확정자 포함)**
외국인보호시설 (0)	외국인 피해자	1년 이내	1년 6개월(1회)	심리적 안정 필요, 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도과 후 추가연장 가능(2년, 1회)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3 장애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장애인 포함)	2년 이내	2년(1회)	취업 및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 중일시

자료: 여성가족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연장사유(학교 재학 중)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19세에,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더라도 21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여야 함.

한편, 「아동복지법」[3]은 18세가 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

3)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

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19세가 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원가정 복귀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4]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024년 6월 기준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4개소이며, 정원 59명 대비 현원은 38명으로 입소율은 64.4%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보호시설의 입소율이 64.4%에 머물고 있어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규로 입소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의견임.

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현황(2024. 6. 기준)>

(단위: 명)

구분	정원	입소 현원	입소자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성인	친·인척 (4촌이내)	타인 등 기타
합계 (35개소)	377	241	79	162	146	98
일반보호시설 (17개소)	171	93	39	54	55	41
장애인보호시설 (8개소)	103	80	15	65	29	51
특별지원 보호시설 (4개소)	59	38	24	14	38	0
자립지원** (6개소)	44	30	1	29	24	6

* 가해자와의 관계는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일반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개소,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행일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시설 유형에 관계 없이[5] 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제외)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생활근거지 문제 등으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보호시설 등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입소하고 있다는 점, 일반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원가정의 복귀가 어렵거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대다수로 퇴소 후 자립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도 입소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제5308호)」[6]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원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도 입소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안(제5308호)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경기도 화성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내 초등학생 입소자부터 25세 성인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되어 신중 검토 의견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입소기간 연장을 특별지원 보호시설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 성폭력 피해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308호) 제16조의2 신설**

제16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 ① 입소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본문에 따른 보호시설(제12조제3항제2호의 장애인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는 만 25세는 장기입소자가 많아질 시 신규입소자 유입이 어렵게 되고, 자립지원 시설의 역할과 중복되는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어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할때(23세)까지 보호하는 것인 적정하다는 의견임.

나.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규정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1.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2. 제17조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9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7]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12월 기준으로 4개소가 있음.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2024. 12. 기준) 】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체	35	2	3	1	2	3	2	1	-	4	1	3	1	2	2	2	3	3
일 반 보호시설	17	2	1	1	1	1	-	1	-	3	1	1		2	1	-	-	2
장애인 보호시설	8	-	1	-	-	1	1	-	-	-	-	1	1	-	1	-	1	1
특별지원 보호시설	**4**	**-**	**-**	**-**	**-**	**-**	**1**	**-**	**-**	**1**	**-**	**-**	**-**	**-**	**-**	**1**	**1**	**-**
외국인 보호시설	0	-	-	-	-	-	-	-	-	-	-	-	-	-	-	-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6 (3)	-	1 (1)	-	1	1 (1)	-	-	-	-	-	1 (1)	-	-	-	1	1	-

자료: 여성가족부

현행법[8]상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미성년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여 해당 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현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9]에 따라 퇴소자립지원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금(2025년 인상, 5백만원→10백만원) 및 자립수당(2025년 신설, 5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 제외)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10]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3조[11]에서는 보호시설의 업무에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12]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는 퇴소 시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과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 생활 상담, 사례관리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대상자와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퇴소 피해자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이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에 비해 부족하고, 자립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13].

미성년 피해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13)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입법조사처[2024. 7. 18. NARS 입법·정책(현장실태조사), 152호]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자립수당(월 50만원, 5년간)을 신설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퇴소 이후 정기적 생활 상담,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체계가 없는 실정임.

【 친족관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와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비교】

지원사항	친족관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보호종료아동
법적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14조	아동복지법 제38조 등
경제적 지원	퇴소 시 자립지원금(1,000만원) * 2025년 인상(500만원→1,000만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자립수당(월 50만원, 5년간) * 2025년 신설	자립수당(월 50만원, 5년간)
사후관리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운영 (6개소, 입소기간 2년) * 퇴소 이후 사후관리 체계 없음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19개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하여 정기적 생활 상담,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 기타 민간장학금, 취업지원 등 민관지원사업 다양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의 자립지원의 내용에 퇴소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형성지원,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 등을 추가하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의 내용과 동일·유사하게[14] 규정함으로써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원가정 복귀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15]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16]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제2883호),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제3158호)〕이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아동복지법」상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

---

14)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 제3호(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만 제외하고 있음.

15)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16)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입법조사처[2024. 7. 18. NARS 입법·정책(현장실태조사), 152호] 47p.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886호, 제3856호)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원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미성년 피해자를 위해 자립수당 및 주거 지원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 노출을 꺼려하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보편적인 청소년 복지체계 안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신중 검토 의견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자 또는 친인척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서, 시설 유형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중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타 법령에 준하는 자립수당 등의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일부 수용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